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66

발의연월일: 2025. 1. 23.

발 의 자:윤호중ㆍ이수진ㆍ권칠승

정준호 • 양부남 • 민병덕

이학영 • 김영환 • 황정아

김종민 · 박정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들어 경제적 수익뿐 아니라 공익적 가치 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한 사회투자는 확대되고 있고, 게이츠 재단 등 글로벌 유수 공익법인이 이 분야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2021년 기준 국내 사회적금융 규모는 6,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나, 비영리 민간기금 융자는 2% 정도에 불과하여 활성화가 필요함. 미국의 경우 1960년대부터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한 투자에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공익목적 투자를 촉진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공익목적 투자에 대한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고, 동 투자의 가능 여부도주무관청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등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임.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공익목적 투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규정하고, 총출연재산의 의무 지출 에 포함하며,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익목적 투자를 주식취득 비율 제한의 예외로 두어 국내 공익목적 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법률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를 "출연받은 재산을 다음 각 목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로서"를 "경우 및 공익법인등이 제1호가목에따른 공익목적투자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외한다"를 "제외하되, 제1호가목의 공익목적투자는 포함한다"로 한다.

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공익목적사업을 위하여 제16조의 공익법인등에 대출하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에 주식 또는 지분 투자 및 대출하는 경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투자하는 공익목적투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익목적투자"라 한다)

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 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개 정 아 행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생 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 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 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 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 1. 출연받은 재산을 다음 각 목 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 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이 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하 이 호에서 같다)의-----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 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 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 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 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 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 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공익목적사업을 위하여 제16조의 공익법인등에 대출하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중소기업자에 주식 또는지분 투자 및 대출하는 경

<신 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 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이 호및 제3항에서 같다)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을 내국법인의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주식등

		<u>우 또는 '자본시상과 금</u>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금융투자상
		품을 거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공익목적투
		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
		익목적투자"라 한다)
	나.	.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
		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
		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
		는 경우
).		

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 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1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은 "취득"으로 본다)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가. ~ 다. (생 략) 3. ~ 6. (생 략)

7. 다음 각 목의 공익법인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100분의1(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제9

	<u>경우 및 공익법인등이 제1</u>
	호가목에 따른 공익목적투자
	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도 구격을 취득하는 경구도시
	,
0	가. ~ 다. (현행과 같음)
3. -	~ 6. (현행과 같음)
7.	

항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 목적사업(「소득세법」에 따라 라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거나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은 <u>제외</u> 한다)에 사용한 경우

가.·나. (생 략) 8. (생 략) ③ ~ ⑭ (생 략)

제외하되, 제1호가목
의 공익목적투자는 포함한다.
가.・나.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③ ~ ⑭ (현행과 같음)